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유서

성 명	한 글	이 준 상	일본명	
	한 자	李 濬 相	이 명	
출 생 연월일	1840년 11월 29일		사 망 연월일	미 상
본 직	京城府 南部 大坪坊 水下洞 16統 10戶(1913년 주소)			
주 요 경 령	1904년 이전			
	1840.11.29	출생 (대한제국관원이력서, 95쪽)		
	1896.8.13~1898.1.29	경기관찰부 주사(판임관6등) (같은 자료)		
	1899.10.17	중추원 의관(주임관6등) (같은 자료)		
	1900.1.2	농상공부 기사(주임관5등) (같은 자료)		
	1900.1.17	탁지부 재무관 (같은 자료)		
	1900.8.7	탁지부 회계국장 (같은 자료)		
	1900.8.15	駐劄日本國公使隨員 (같은 자료)		
	1904년 ~ 1945년			
	1905.2.16	탁지부 출납국장 (대한제국관원이력서, 95쪽)		
	1906.3.27	탁지부 이재국장(칙임관3등) (같은 자료)		
	1906.4.24	농공은행 설립위원 (황성신문, 1906년 4월 27일 1면)		
	1908.12.28	文官普通銓衡委員 (같은 자료, 1908년 12월 26일 2면)		
	1909.7.8	일본정부로부터 皇太子渡韓記念章(훈3등) 받음 (관보, 1909년 7월 14일)		



	1910.10.1~1921.4.27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 (任免 卷3, [1910]; 조선총독부관보, 1921년 5월 3일)
	1912.8.1	일본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음. (조선총독부관보, 1913년 6월 7일[부록])

조 사 내 용

1.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9호(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와 관련하여

1)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 재직

▶ 「勳一等金允植外三十三名中樞院副議長同顧問及同贊議被仰付ノ件」, 『任免』 卷26, 1910; 『조선총독부관보』, 1910년 10월 7일.

이준상이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에 임명됨.

▶ 『조선총독부관보』, 1921년 5월 3일.

1921년 4월 27일 관제개정에 의해 폐직됨.



【참고사항】 일본정부로부터 훈포상을 받은 행위

(1) 한국병합기념장

- 출전: 『조선총독부관보』, 1913년 6월 7일(부록).

1912년 8월 1일 <明治45년 칙령 제56호>에 의해 일본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음.

(2) 황태자도한기념장

- 출전: 『관보』, 1909년 7월 14일.

1909년 7월 8일 일본정부로부터 皇太子渡韓記念章을 받음.

“탁지부 사계국장 훈3등 이준상, 일본국에서 수령한 皇太子渡韓記念章 (중략) 右는

該員 등에게 각기 영수한 기념장에 사용함을 勅裁를 經하여 准許함, 7월8일 表勳院”

판 단

이준상은 경기도 관찰부 주사를 거쳐, 대한제국 시기에는 농상공부와 탁지부에서 주로 관료로 활동한 인물이다. 특히 1900년대에는 탁지부에서 회계국장, 출납국장, 이재국장 등 요직을 두로 역임한 사실로 미루어, 이 시기 대한제국 정부의 재정분야 전문관료였던 것으로 보인다. 1900년에 주일공사 수행원을 역임한 사실도 그의 관력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다.

한일합병 직후인 1910년 10월 1일에는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인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로 임명되어 1921년 4월 27일 폐직될 때까지 10년 넘게 활동하였다.

또한 이준상은 일본정부로부터 일본왕족의 도한(渡韓)과 관련하여 1909년 7월 8일 황태자도한기념장을 받았으며, 1912년 8월 1일에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이준상이 10여 년 이상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로 재직된 행위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9호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장** 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에 해당된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이준상의 행위를 <특별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다.

2006년 9월 11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